

#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

##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# 제안설명

□ 존경하는 유 용 위원장님!

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!

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권 영 희 의원입니다.

이렇게 선배·동료의원님들을 모시고 「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.

□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□ 본 조례안은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안전망 편입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「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」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,

부도·폐업 시 영업손실, 부채상환부담 등 생계위협에 직면에 있어 일반 근로자에 비해 빈곤층 전락 위험이 큰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,

□ 영세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「노란우산공제 가입 희망장려금 지원 사업」의 사업 추진 연속성 확보를 위해 사업추진근거조항의 효력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부칙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.

- 존경하는 위원장님! 그리고 선배·동료위원님 여러분!
- 지금 우리나라의 소상공인들은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 부진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
  - 지역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용기를 북돋고,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유지·강화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,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